

※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(2020.06.25 이후)만 인정됩니다

구분	필수	해당자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	본인	- 접수 장소에 비치 - 인터넷청약(청약홈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	○	복무확인서		-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해당지역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,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
	○		청약통장순위확인서		-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제외, 인터넷청약(청약홈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요망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신분증사본	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인감도장		-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- 발급일확인(용도:아파트계약용) / 본인발급용
	○		출입국 사실 증명서		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5항에 따라 해외체류 기간 확인 후 거주기간을 인정받아 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(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6.25일)까지)
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	
신혼 부부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)
	○		소득증빙서류	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만 19세 이상 동일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혼인신고일 확인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
		○	기본증명서	자녀	-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
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- 입양의 경우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	- 임신의 경우(건본주택에 비치)
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	- 비사업자의 경우(건본주택에 비치)	
대리인 신청시	○		당첨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		용도 : 아파트계약 위임용 [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]
	○		위임장	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	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관련 서류 발급기관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 서류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)	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②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①,②해당직장
	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*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*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 ②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*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	*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계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*국민연금관리공단 *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①세무서 ②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*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	①세무서, 해당직장
국민 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*비사업자 확인각서(주택전시관에 비치) ※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	*건본주택 내 비치	